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

				1-8-1		וייכ				(앞쪽)
접수번호		접수일		발급	·일		ᄎ	리기간:	7일	(エコ)
특수 의료 장비	명칭			용도			모델명/형식			
	제조연월일 제조번.			호 제조사/제		조국	국 신		신품/중고	
	의료장비 바코드			장비번호				허가(신고)번호		
	도입형태			구입일			구입금액			
1. 의료장비 바코드: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(31자리)를 적습니다. 2. 장비번호: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. 3. 허가(신고)번호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(수입) 허가번호를 적습니다. 4. 도입 형태는 1. 구입, 2. 임차(리스), 3.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. 5.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, 대한민국 통화단위(원, ₩)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(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).										
의료 기관	명칭		요 (요양기관기호						
	주소		종	종류						
	전화번호/F		설	설치장소						
	개설자성명					개설	개설자 생년월일			
				특수의료장비 인	력 현황					
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		성명		면허(자격)종류		면허(자격)번호			근무 시작일	
영상의학과 전문의		성명		자격번호		전속 비전		속 근무 시작일		
방사선사		성명		면허번호		전속 비전		속 근무 시작일		
※ "명허(지	ŀ결)좋류"는 º	사 영사이하고 저무이 바.		사선사로 구분하며, "전속", "				하니다.		
w E-1(1 1/0 11 2	1,00111	, 0		•		1021	<u> </u>	= 1 11	
총 병상수		 병	۸ŀ	특수의료장비 스 ○ 자 체 병 ○ 공동활용 병) 병상) 병상			
				○ 공동활용 병 로장비의 설치 5				제2조제	베1항 및 제:	 2항에
	_	수의료장비의								
시장 (• 군수 • ·	구청장 🧦	기하	신청인					년 월 (서명 또는	일 - 인)
청부서류 뒤쪽참 조 수수로 없음										

1.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)

2.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)

첨부서류

- 3.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(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)
- 4.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)
- 5. 세금계산서,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

유의 사항

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3항).



수수료 없음